

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·세출 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6년 5월 10일(화),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- 2016년 6월 7일(화)

4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2015. 6.4. 법률 제12738호) 제134조제1항
- 「지방재정법」(2016. 1.1. 법률 제13638호) 제51조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(2015. 12.4. 대통령령 제26691호) 제59조

5. 보건소 소관

1) 부서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원)

구 분	세입예산액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징수율	
				세입예산액 대비	징수결정액 대비
계	8,496,374,000	8,503,878,690	8,469,159,690	99.7%	99.6%
보건행정과	1,477,342,000	1,492,288,220	1,492,288,220	101.0%	100.0%
위 생 과	41,620,000	174,150,330	147,335,330	354.0%	84.6%
지역보건과	6,431,223,000	6,296,788,800	6,288,884,800	97.8%	99.9%
의 약 과	546,189,000	540,651,340	540,651,340	99.0%	100.0%

2)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
계	14,890,742,000	254,614,000	-	15,145,356,000	13,938,114,156	145,532,500	1,061,709,344
보건행정과	2,556,111,000	254,614,000	-	2,810,725,000	2,284,925,266	145,532,500	380,267,234
위 생 과	229,515,000	-	-	229,515,000	209,559,200	-	19,955,800
지역보건과	10,978,921,000	-	-	10,978,921,000	10,367,148,310	-	611,772,690
의 약 과	1,126,195,000	-	-	1,126,195,000	1,076,481,380	-	49,713,620

3) 세출결산 예산집행잔액 사유별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계	사 유 별			
		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	예산절감	집행잔액	보조금 집행잔액
계	1,061,709,344		60,151,000	304,076,611	697,481,733
보건행정과	380,267,234		12,760,000	42,347,024	325,160,210
위 생 과	19,955,800	-	6,264,000	12,986,700	705,100
지역보건과	611,772,690	-	37,546,000	219,182,420	355,044,270
의 약 과	49,713,620	-	3,581,000	29,560,467	16,572,153

4) 식품진흥기금결산

(단위: 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A+B)	비고
		계(B) (C-D)	조성액 (C)	사용액 (D)		
식품진흥기금	1,593,882,888	354,347,319	506,141,329	151,794,010	1,948,230,207	

6. 검토의견

【일반회계 세입결산】

-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4억9,637만4천원, 징수결정액은 85억387만8,69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84억6,915만9,690원이며,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.7%,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.6%임. 다음연도 이월액은 3,471만9천원이 되겠음. 실제수납율은 높은 수준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가 요구됨.

【일반회계 세출결산】

-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48억9,074만2천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사고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억4,535만6천원이 되었음.
이중 예산현액 대비 92.0%에 해당하는 139억3,811만4,156원이 지출되고, 1억4,553만2,50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6,170만9,344원이 되었음.
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.0%로 전년도 17.9%보다 낮은 수준이며,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, 예산절감 5.7%, 예산집행 잔액 28.6%, 보조금 집행잔액 65.7%가 되겠음.
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보면, 보건지소 확충 24.8%(예산현액 2억5,461만4천원, 집행잔액 6,323만800원),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 85.7%(예산현액 3천만원, 집행잔액 2,569만8,560원), 특수구급차 확보 30.3%(예산현액 1억1천만원, 집행잔액

3,333만7,800원), 국가지원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 33.3%(예산현액 3,500만원, 집행잔액 1,165만2,500원), 서울시 지원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 55.3%(예산현액 1억7,900만원, 집행잔액 9,902만원), 감염진료실 장비지원 68.7%(예산현액 3천만원, 집행잔액 2,061만2,110원),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76.9%(예산현액 1,300만원, 집행잔액 1천만원)가 되겠음.

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과 특수구급차 확보,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(서울시 지원) 등 메르스(MERS) 관련 보조금은 구에서 필요한 소요예산과 관련 없이 서울시에서 정액 교부된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,

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(전액 시비)은 조기은퇴, 노후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가장 높은 50대의 우울증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정신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【기금 결산】

-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9,388만2,888원이고,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614만1,329원,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5,179만4,010원이며,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4,823만207원이 되겠음.

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는 지출계획현액 3억5천만원 대비 14.3%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용자하여 용자실적이 저조한바, 이는

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의지부족과 은행 담보능력 부족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른 융자도 가능하므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융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